

2003년도
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

2002. 11.

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

(국 제 협 력 팀)

I. 사업목적

-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
-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지역연구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의 국제교류·협력 활성화

II. 사업내용

1. 사업규모 : 1,979백만원(경상운영비 포함)

2. 지원방향

가. 해외방문연구지원의 내실화

- 방문국 또는 방문연구기관의 학자와의 공동연구 장려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
- “연구실적” 중심에서 연구계획의 “참신성” 또는 “창의성”에 역점을 두어 선정, 지원

나. 학문적 수월성 제고

- 우수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
- 국외전문학술지 게재를 권장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 및 국제적 확산 도모

다. 해외지역연구 활성화

- 현지연구(field work)를 통한 지역 연구의 심화
- 특정지역 방문연구 편중 지양과 방문국가 및 연구기관의 다양화

III. 소요예산 및 사업추진일정

1. 소요예산 : 1,979백만원

가. 지원기간 : 6개월 또는 1년

나. 선정과제(인원) : 100과제(명) 내외

2. 선정 비율

가. 지역별 선정 비율

- 미주지역(오세아니아 포함) : 50%내외
- 유럽지역 : 30%내외
- 기타지역(아시아, 아프리카, 남미 등) : 20%내외

나. 기간별 선정 비율

- 1년 지원 : 50%내외
- 6개월 지원 : 50%내외

3. 사업추진일정

추진 일정	추진 내용	비고
2002년 11월	- 과제 공모	
12월	- 신청접수 마감 및 접수결과 보고	
	- 1단계 : 요건심사	
2003년 1월	- 2단계 : 전공패널심사	
2월	- 3단계 : 종합조정심사 및 과제 선정	
	- 선정결과 통보 및 방문연구 지원	

IV. 지원계획

1. 지원분야 및 형태

가. 지원분야 : 전 학문분야

나. 지원연구형태 : 단독연구

2. 지원규모

가. 지원규모 및 기준

- 방문연구비
 - 항공료 : 방문연구자 본인에 한하여, 정부예산 편성기준 국외항공요금 GTR 할인을 적용 (economy-class, 왕복)
 - 연구비 : 2000만원(1년 방문연구), 1000만원(6개월 방문연구)

3. 공모 및 신청

가. 공모방법

- 대학(교)의 총(학)장에게 공문 발송
-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하여 공고

나. 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 : 재단 홈페이지 「학술연구자정보」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 혹은 수정한 후 “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”에 신청
※ 연구실적은 재단의 학술연구자정보DB를 활용하므로 지원신청자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,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함
- 온라인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하고, “’03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지원신청서”(＜붙임 2＞참조)와 “연구계획서”(＜붙임 3＞참조)는 동 사업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(반드시 On-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함) 소속대학 연구지원처(과)로 송부하여 소속대학 총(학)장이 수합, 일괄 신청함
- 대학 총(학)장은 우수한 연구자를 선발하여 일괄 추천하되(＜붙임 1＞ 참조) 해외에서의 연구수행이란 점을 감안하여 추천함
- 소속대학 총(학)장의 추천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온라인 신청 :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해 직접 작성
- ’03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: 10부
(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소속대학 총(학)장을 통해 일괄 제출)
- ※ 기타 연구계획관련 교환서신(e-mail 교환서신도 가능) 일체 첨부

☞ 신청절차 : 연구계획수립 및 방문예정기관과 협의 → 초청장 또는 방문연구협조 혹은 수락 서신 입수 → 총(학)장 추천

다. 신청기간

- 온라인 신청기간 : 2002. 11. 11(월) ~ 11. 29(금) 17:00까지
※ 온라인 신청 마감 당일 신청 채도로 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, 사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연구계획서 접수마감 : 2002. 12. 13(금) 17:00(도착분)까지
※ 상기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반송조치 하오니 기한 엄수 하시길 바랍니다.

라. 신청자격

-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 장기간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 중, 1998. 1. 1부터 2002. 12. 31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, 특허 및 전문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 등의 연구실적이 **5편이상**인 연구자로서
 - **인문·사회계열**(예술 및 체육계열 포함) :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,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결과 A, B급 학술지, 또는 국제적 수준(A&HCI, SSCI급 등)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(단, 단독저서 및 단독역서는 1편으로 대체 가능)
 - **자연계열** :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,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 부여조사연구결과 A, B급 학술지, 또는 국제적 수준(SCI 및 SCIE 급 등)의 학술지 게재 논문(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포함)이 3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
- ☞ 단, 특수한 분야로 등재(후보), A, B급 학술지 **【인문·사회계열】** 또는 SCI급 **【자연계열】** 학술지 등에 게재하기 어려운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관련서류를 연구계획서 제출 시 첨부
- ☞ 연구업적 산정시 단독저서 및 단독역서는 논문 2편으로 인정 (공동저서 및 공동역서는 논문 1편으로 인정)
- ※ 신청마감 이후 2002. 12. 31 이내에 게재 예정인 논문은 게재예정 증명서 첨부 후 별쇄본 제출

4. 신청제한

- 가.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**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(2002. 11. 29)**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나.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 지급 중지 혹은 연구비 회수 일로부터 **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(2002. 11. 29)**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

- 다.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(2002. 11. 29) 재단의 연구결과 논문평가에
에서 하위등급(D급)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C급으로
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(단, 2000년
이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C급으로
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
- 라.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책임
자로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3. 12. 31 이후인 연
구자(BK21사업의 단장 포함)
- 마. 동 사업 기수혜자로 (연구종료일로부터)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
(2002. 11. 29)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

5. 심사 및 선정

가. 심사절차

단 계 별	심 사 내 용		비 고
1 단계	행정요건심사	신청자격 적부	재 단
2 단계	전공패널심사	연구계획서에 대한 전공패널심사	패널 심사단
3 단계	종합조정심사	방문연구 지역 및 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조정심사	재 단

나. 심사방법 및 내용

- 제 1단계 심사(요건심사)
 - 심사주관 : 재단
 - 심사방법 :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 여부 등 검토 (2단계 심
사 가부 결정)
- 제 2단계 심사(전공패널심사)
 - 심사주관 : 패널심사단
 - 심사내용 : 연구계획서에 대한 전공패널심사

심 사 항 목	심 사 기 준	배점	비고
1. 해외방문연구의 타당성	- 해외방문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 - 연구내용과 방문국가 및 연구기관의 적합성	200	
2. 방문연구과제의 창의성(참신성)	-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(독창성) - 연구방법의 참신성	150	
3. 연구수행 능력	- 방문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 - 신청과제의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	100	
4. 연구의 활용정도 및 기여도	- 연구결과의 교육 및 학문발전에의 파급효과 정도	50	
계		500	

○ 제 3단계 심사(종합조정심사)

- 심사주관 : 재단

- 심사내용 : 방문연구지역별 및 방문연구기간별 선정 비율에 의한 최종 조정

다. 선정취소

- 선정자 중 징계의결 요구, 징계처분 (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해당자) 중에 있는 연구자
- 징계처분이 종료된 자로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 (견책 6월, 감봉 12월, 정직 18월)
- 타 기관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연구자
-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연구자
- 예비 선정된 후 2003. 12. 31까지 출국하지 않은 연구자

6. 관리운영

가. 출국 : 선정통보일로부터 2003년 12월까지 출국을 원칙으로 함 (단, 2003년 1월 이후 선정통보일 전에 기출국한 경우 소급지원 가능)

나. 일시귀국 :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방문연구자 본인이 부담

- 일시귀국 및 조기귀국 허용기간 : 1년 방문연구자는 20일, 6개월 방문연구자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. 단, 방문연구기간 종료 후 계속 현지에 체류하고 입국한 경우 1년 방문연구자는 최대 4주, 6개월 방문연구자는 최대 2주 범위 내에서 초과일수를 감함
- 방문연구자는 방문연구기간 중 임의로 연구를 중단 또는 일시귀국 할 수 없으나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귀국 허용일수 내에서 귀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방문연구자는 사전에 사유서를 소속 대학을 경유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

다. 지급경비 회수

- 일시귀국 및 조기귀국 회수조치 : 방문연구기간 중 일시귀국 및 조기귀국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회수함
- 방문연구비(전액 또는 일부) 회수
 -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
 -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
 -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-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
 -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
 - 연구결과논문이 표절로 판단(인정)될 경우
 -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재단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은 경우
 - 연구수행 중 재단이 정한 의무사항(협약서 및 관리지침)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

라. 연구계획 변경 : 연구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.

※ 단, 당초 연구계획서와 동일하나 연구수행 도중 불가피한 경우 연구자가 연구계획변경 신청서를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당초 전공심사자에게 우송심사를 실시하여 연구계획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

7. 보고서 제출 및 평가 (모든 보고서는 국내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제출)

가. 체재지 도착보고 : 출국 후 1개월 이내에 「체재지 도착보고서」 제출

나. 중간보고 : 출국 후 5개월경과 후에 「중간보고서」와 「현지현황보고서」 제출

※ 6개월 방문연구자는 「현지현황보고서」만 제출

다. 귀국보고 :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「귀국보고서」 제출

라. 결과보고 :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

(1) 제출자료

-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1부
- 논문초록 1부
- 연구요약문(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) 1부
- 연구결과논문 (학술지 게재논문 또는 게재 예정 논문) 또는 학술저서 3부
- 디스켓 1매(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, MS워드 또는 PDF파일로 작성)

※ 연구결과보고 미 이행자는 결과보고가 제출될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신청을 제한함

(2)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: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 전액을 회수하고 회수한 시점부터 향후 5년 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에 대하여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

※ 단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, (연구종료 후) 1년이 경과되기 전에 “사유서”를 작성,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재단이 검토·승인할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 회수 기한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되,

※ 이 경우 (연구종료 후) 최대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(초과시 즉시 회수)

마. 최종연구결과 보고

- (1) 최종연구결과물 게재 또는 출판의 의무 : 인문·사회계열(예술 및 체육계열 포함)은 최종결과물을 「국내외전문학술지」에, 자연계열은 「국외전문학술지」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
- (2)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: 연구결과보고 제출기한(6개월 이내)으로부터 2년 이내 인문·사회계열(예술 및 체육계열 포함)은 <국내외전문학술지 별쇄본> 혹은 <게재확인서>가 첨부된 게재논문 1부, 자연계열은 <국외전문학술지 별쇄본> 혹은 <게재확인서>가 첨부된 게재논문 1부 또는 출판된 전문학술저서 1권 제출
 - ※ 연구개시 후 **6개월 이내**에 국내외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
 - ※ 기한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“사유서(자유형식)”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
- (3) 연구결과 논문을 국내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
 - 국문표기 : “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(KRF-2003-013-과제번호)”
 -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(KRF-2003-013-과제번호)”
 - ※ 기타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표기
 - ※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수혜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원칙적으로 불허함
- (4) 기타사항 : 언론매체에 연구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본 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해야 함
- (5) 최종연구결과물 미 제출자에 대한 관리 : 최종연구결과물을 인문·사회계열(예술 및 체육계열 포함)의 경우 「국내외전문학술지」에, 자연계열은 「국외전문학술지」에 게재하지 않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 재단의 소정평가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 C등급은 결과통보 이후 3년 간, D등급은 5년 간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이 실시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함

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C, D등급 연구자는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, 공개에 관한 세부내용은 재단의 결정에 따라야 함

바. 결과보고서 제출 면제 등

- 재단은 연구비를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음.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 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함
 - 사망한 때
 - 불구폐질이 된 때
 - 화재·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
 - 기타 실종·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

사. 연구결과물 활용

- 연구결과논문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학술연구통계 등 연구자료로 활용
 - 연구결과논문의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를 원칙으로 함 (단, 국내외전문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에 있어 문제시될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)
 - 연구현황 및 각종 통계 등의 학술서비스(유관기관과 연계)
- 연구성으로 발생한 제 권리(저작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 등)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수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, 연구자의 연구로 발생한 제 권리 등을 국가 또는 재단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

♣ 문의처 및 제출처

(우)137-748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팀

TEL : (02) 3460-5604(5602) FAX : (02) 3460-5578

E-mail : grace292@ms.krf.or.kr

<붙임 1> : 해당기관 작성

대 학 교 수 해 외 방 문 연 구 지 원 총 괄 추 천 서

대학명 :

연번	학문분야	성명	주민등록번호	방문예정국 (연구기관명)	방문 기간	출국예정일	비고
	()		-				

* 신청공문은 소속기관의 서식에 의거, 별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 동일 학과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여 모두 선발될 경우 강의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니 학교의 학사일정, 규정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〈 기 재 요 령 〉

- 학문분야 : ()밖은 연구학문분야 (인문·사회·자연·이학·공학·의약학·농수해양·예술체육·복합)을 표시하고 ()내에는 세부학문분야(미시경제·인공지능 등)를 표시
- 방문기간 : 6개월, 1년 중 선택
- 출국예정일 : 2003년도 예산운용에 필요하니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·일을 정확히 기재

'03년도 대학교수 해외 방문 연구
지원 신청서

관리번호	기재하지 마십시오.						접수번호	On-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							
방문연구기간	6개월 () 1 년 ()						심사회망학문분야		*1개 분야 이상 기재 가능 (CODE:)						
신 청 자	소 속		국문: 대학(교) 학과				직 위								
							연락처	연구실:() - 자 택:() - H. P. : E-mail:							
	성 명		국문:				영문:								
	주민등록번호		-												
	최종학위		대학(교)		최종학위 수여국가				전공						
연구과제명		○ 국문: ○ 영문:													
방문예정국				방문예정 기관명		1. 2. 3.									
출국예정일		년 월													

- ※ **심사회망 학문분야**는 [인문, 사회, 자연, 공학, 의학학, 농수해양, 예술체육, 복합학] 중에서 선택하고, CODE는 재단 홈페이지(www.krf.or.kr)의 연구분야분류표를 참조하여 연구분야분류표상의 세부분야명 코드를 **반드시**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※ 신청자 인적사항 중 성명의 영문은 여권상 표기와 동일하게 기록하여 주시고, 소속 대학명 및 학과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정식명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방문예정 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 방문예정 연구기관은 1~3개 기관을 접촉하여 연구수행을 위해 출국할 경우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주십시오.
- ※ 출국예정일은 2003년도 예산운용에 필요하니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·일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.
- ※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는 필히 컴퓨터(PC)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

본인은 <붙임>과 같은 방문연구를 수행하고자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사업을 신청하며,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귀 재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신 청 자 : (인)

상기 연구자를 귀 재단의 “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” 신청자로 추천하며, 선정될 경우 신청인을 대리하여 귀 재단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해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.

2002 년 월 일

소속기관장 (직인)

한국학술진흥재단 이 사 장 귀 하

<붙임 3>

※접 수 번 호	On-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
----------	--

※과 제 번 호	기재하지 마십시오.
----------	------------

【 연 구 계 획 서 】

※ 아래의 각 항목별로 1~3매씩 〈총 10~30매 내외〉 분량으로 작성하십시오.

1. 연구목적 및 필요성
2.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
3.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당위성
4. 방문예정연구기관 또는 방문국 학자와의 추진경위
5.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6. 방문연구 추진일정
※ 추진일정은 첨부된 별도의 서식 활용
7. 국내·외 연구동향 (연구배경)
8. 기타 참고사항 (방문예정연구기관 학자와 교환된 서신 등)

<별도 서식>

5. 방문연구 추진일정

(연구기간 : 2003. . ~ . . 예정)												
연구월차 연구내용	1 월차	2 월차	3 월차	4 월차	5 월차	6 월차	7 월차	8 월차	9 월차	10 월차	11 월차	12 월차